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7. 28.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경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내의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이하 “실험·실습실 ” 이라 한다)에서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습실” 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생이 실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험실,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 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사용자)” 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생으로서 실험·실습실에서 연구, 실험, 실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실 안전 책임자” 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 및 실험, 실습 등의 연구 활동 업무를 총괄 하는자(학부장·학과장)를 말한다.
4. “연구실 안전 담당자” 라 함은 해당 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별로 선임된 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안전담당자 (정) 및 행정(실습)조교(안전담당자 (부))를 말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라 함은 당해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지도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3.1.>

제3조(조직) ① 본교 실험·실습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무처(관리팀)을 상시업무 협조 부서로 한다. <개정 2013.7.1., 2014.3.1., 2015.8.31.>

② 교학처장은 본교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총괄자로 하며, 각 연구실 안전 책임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7.1., 2014.3.1.>

제4조(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교 실험·실습실의 안전확보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정책결정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학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홍보1처장,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학과(학부) 안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4.3.1., 2015.8.31., 2016.7.28.>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개정 심의
2.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훈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실습실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⑤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되고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 2015.8.31.>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명) 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학과별 1명으로 하여 해당 학과장을, 연구실 안전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실험·실습실별로 정·부 2명으로 하여 책임자가 추천한 담당자를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한다.

② 임기는 책임자의 경우는 보직기간동안, 담당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단, 담당자의 임기는 교체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

③ 관리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표시한 표를 소관 실험·실습실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① 연구실 안전책임자는 해당학과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8.31.>

1. 안전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 <신설 2015.8.31.>
2.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경위조사 대책 강구 <신설 2015.8.31.>
3. 연구실 안전 담당자 지정 <신설 2015.8.31.>
4.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5.8.31.>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5.8.31.>

② 연구실안전 담당자는 담당 실험·실습실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1.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31.>
2.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지도 및 감독한다. <개정 2016.3.1.>

④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실험·실습실을 사용케 할 때에는 담당자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3.1.>

제7조(안전교육 등) ① 담당자는 실험·실습실 사용(수강)자에게 월 1시간 이상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사항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습실 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실험, 실습 활동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① 사용자는 실험·실습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실습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을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9조(실험·실습실 안전수칙 준수) ① 안전담당자는 담당 실험·실습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습실 내부에 별표 1의 일반안전수칙과 별표 2의 일반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실험·실습실 안전점검) ① 안전담당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습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 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사용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관리자가 주관부서에 의뢰하여 실시

② 제 1항 1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 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점검하고

기록한다.

제11조(비상연락망 및 비상 시 행동요령) ① 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실습실 출입구에 별표 3의 비상시행동요령(비상연락망 포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에는 관리자 및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인근 소방서,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 시 행동요령에 의거 행동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조치 등) ① 안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안전관리 총괄자에게 이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 1항에 의하여 보고된 실험·실습실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및 폐쇄 등 행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②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 인당 1 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 인당 상해등급별로 [별표4]에 해당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 (이하 "후유장애" 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애등급별로 [별표4]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 2 호 및 제 3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 3 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 1 호의 금액에서 제 3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2017.3.1.>

제14조 (안전관리 및 기록 보존) ①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의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매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책임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기록부
2. 실험·실습실 일일점검, 자체검사 기록
3.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점검표
4. 실험·실습실 안전사고보고서
5. 실험·실습사용일지의 사용 기록

③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5]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4조 (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항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조정실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